

“전남에서 살 만 해요”... 생활비 부담 ‘전국 최저’

1인당 가계지출액 1650만원
도 단위 평균보다 170만원↓
가계 흑자액도 608만원 '1위'
“경제적 여유 가질 최적 환경”

전남지역 생활비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생활 만족도 또한 높아 경제적 여유를 가지기에 좋은 정주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다.

25일 전남연구원이 통계청의 '지역소득(2022)'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JNI 인포그래픽-전라남도, 오히려 살기 좋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남의 1인당 가계지출액은 165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기록했다. 이는 도 단위 지자체의 평균 가계지출 금액인 1820만원보다 170만원 낮다.

가계지출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당시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승폭 또한 80만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 작았다. 7대 특·광역시 가계지출의 경우 평균 120만원, 광역·도 지역은 평균 100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 가계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주거·수도광열비였으며,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가 그 뒤를 이었다. 세번째로 많았던 지출 항목은 운송비였으며, 전국 평균으로는 음식 및 숙박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의 경우 지난 2022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해 연도 음식·숙박비 지출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점에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남의 가계 흑자액은 약 608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서울 26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전남에 이어 2위는 울산으로 약 600만원, 3위는 전북으로 538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생활 만족도 또한 전남은 강원, 서

시도별 1인당 가계지출액 및 흑자액			
가계지출액		가계흑자액	
서울	2400	전남	608
대전	2060	울산	600
전북	2040	전북	538
광주	2030	충북	507
세종	1990	세종	440
경기	1980	대전	434
울산	1960	강원	403
부산	1960	인천	401
제주	1960	경기	401
대구	1940	충남	383
경남	1940	경북	351
인천	1910	광주	350
충남	1810	경남	283
충북	1780	부산	279
강원	1760	대구	273
경북	1760	서울	261
전남	1650	제주	127

출처 : 통계청 '지역소득(2022)' 단위:만원

울, 전북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신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남은 생활비 부담이 적어 경제적 여유를 가지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이와 같은 안정적인 민생경제를 기반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여가 등 환경을 제공해 생활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가계지출 구조 및 소비 패턴의 변화를 고려한 공공요금 안정화 등 맞춤형 민생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광주지역의 경우 1인당 가계지출액은 2030만원으로 2400만원을 기록한 서울과 2060만원의 대전, 2040만원의 전북에 이어 네번째로 높았다. 전국 특·광역시 가계지출 평균 금액과는 동일했다.

광주의 가계 흑자액은 약 35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를 기록하면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소비생활 만족도 또한 광주는 전국 10위에 그쳤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거짓증언 요청 아냐...방어권 행사”
이 “진실 되찾아준 재판부 감사”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이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며 “이 증언들은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재명과 통화한 이후 김진성이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개입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김병량과 KBS 사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혐의 내지 합의가 있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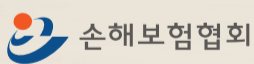
이어 “김사차청 사건 당시 김병량의 핵심 측근인 김진성에게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증언이 거짓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 ‘위증의 고의’에 대해서는 “이재명은 김진성이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재명에게 김진성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사의 고의’에 대해서도 “김진성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증언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재명이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이재명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6면 서울·김선욱 기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우리 모두의 목숨을 위협하는 범법행위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15점의 벌점 및 6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